신규상장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확인서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안내] □ 공모주 청약시 중복청약이 불기 등) 기준으로 <u>최초 1건에 대해서</u> □ 이 외 미적격 청약분에 대한 청	너만 청약	후 효력(이 유효합니다	₽.	
□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항에 제4호의2					
• 4의2.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정 않은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초로 상 [:]				
가. 해당 주권을 배정받고자 하는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청약(하나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은 행위 나. 가목에 따라 중복청약을 확인했음에도 청약자가 최초로 청약한 금융투자업자가 아 닌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청약자에게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년	월	일		
			계좌번호 :		
			고객명 :		(인
■ 유선시 확인사항• 통화자 : • 통화시간 :• 통화번호 :					

